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88
----------	------

2024년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8월 12일
다. 회부일 : 2024년 8월 14일
라. 상정일 :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은평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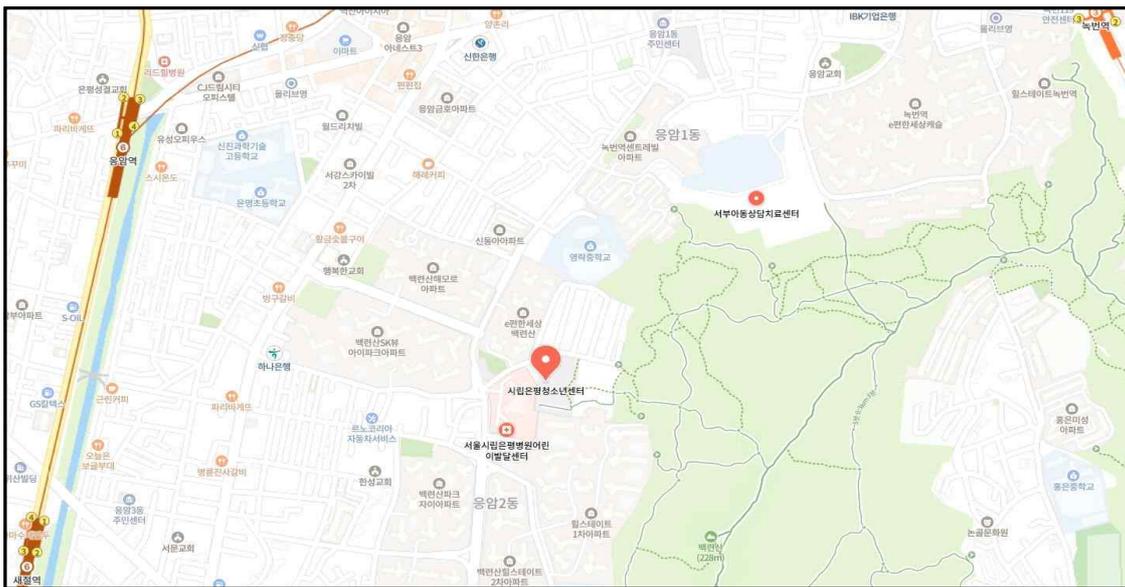
-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시설규모 : 부지 13,500 m^2 / 건물 4,963 m^2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프로그램실, 특성화 프로그램실, 수영장, 대강당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5.1.1 ~ 2027.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550백만원('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61백만원, 운영비 868백만원, 사업비 2,72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2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사단법인 엔젤스헤이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2025.1.~2027.12.)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3,500㎡ / 연면적 4,963.16㎡ (지하 1층~지상 3층, 대강당)
- 주요시설 : 수영장, 에어로빅실, 체력단련장(헬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민간위탁기간 : 3년(2025.1.1. ~ 2027.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741백만원('24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웹툰 교육 및 체험, 공모전 등 웹툰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는 ‘Dream 스케치’,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독서지도, 로봇공학,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찬’ 등 118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률은 80%에 가까운 수치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구분	프로그램 수	이용인원	청소년	청소년이용률
2021년	117개	338,559명	264,565명	78.1%
2022년	117개	757,807명	580,234명	76.6%
2023년	124개	777,872명	614,320명	79.0%
2024년(~7월)	118개	270,126명	213,693명	79.1%

〈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다. 이용자 관리

□ 업무내용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다만, 최근 3년간 청소년정책과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채용합격 기준 미비, 계약 인지세 미납부,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음.

〈 최근 3년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지도·점검 지적사항 〉

- 직원 채용합격 기준 미비
- 매입세액공제액 회계처리 미흡
- 계약 인지세 미납부
- 수익계약 구비 서류 미흡

- 앞선 노원·수서 두 청소년센터에 비해 지적사항이 적은 편이지만, 같은 시설을 15년이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회계 등 시설 운영의 기본 사항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수탁현황 〉

- 2003.10.25. ~ 2006.10.24. : 신 규 / (사)엔젤스헤이븐
- 2006.10.25. ~ 2009.10.24. : 재계약 / (사)엔젤스헤이븐
- 2009.10.25. ~ 2012.12.31. : 재위탁 / (사)엔젤스헤이븐
- 2013.01.01. ~ 2014.12.31. : 재계약 / (사)엔젤스헤이븐
- 2015.01.01. ~ 2017.12.31. : 재위탁 / (사)엔젤스헤이븐
- 2018.01.01. ~ 2019.12.31. : 재계약 / (사)엔젤스헤이븐
- 2020.01.01. ~ 2022.12.31. : 재위탁 / (사)엔젤스헤이븐
- 2023.01.01. ~ 2024.12.31. : 재계약 / (사)엔젤스헤이븐

- 청소년센터의 인사·회계·물품관리 등의 문제점은 특정 수련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단체 중 청소년활동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위 3개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이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청소년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추계 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시 지역 커뮤니티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참신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88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은평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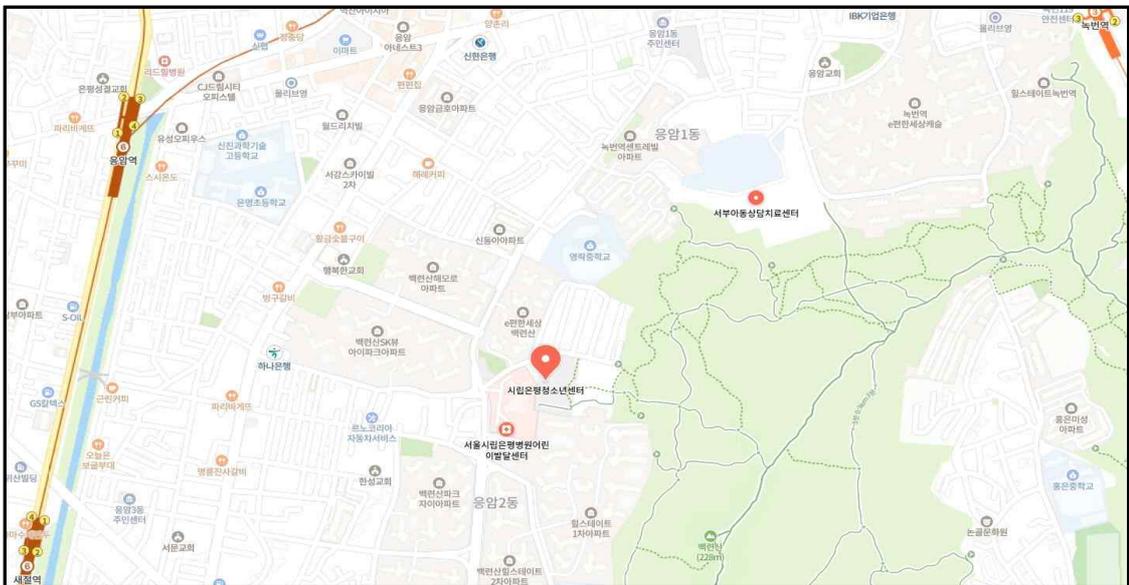
-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개관일자 : 2003. 11. 1.
- 시설규모 : 부지 13,500 m^2 / 건물 4,963 m^2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프로그램실, 특성화 프로그램실, 수영장, 대강당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1.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550백만원('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61백만원, 운영비 868백만원, 사업비 2,72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혜진 (☎02-2133-4121)